

『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승마장과 육성자연휴양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하여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해 1일 기승 이용료 50퍼센트를 할인하거나 승마 또는 마차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별표 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 및 제139조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.(2013.8.19)

5. 검토의견

- 본 ‘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,
 - 승마장 및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 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 속의 집 사용자)에 대하여 승마장의 이용료를 감면.

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적용.

- 1일 기승 : 이용료의 50% 감면.
- 승마체험 : 이용료의 전액감면.
- 마차체험 : 이용료의 전액감면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